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 ~ 11.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
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분할납부의”를 “분할 납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하거나”를 “연기하거나”로, “연장은”을 “연기는”으로, “납부기한간의”를 “납부기한 간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 ----- ----- ----- ----- -----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된 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를 취소하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
----- 분할 납부
하게 -----

----- 분할 납부의 -----
-----.

<삭 제>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
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
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u>납부하여야</u>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u>납부하여야</u> 한다. ③·④ (생략)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납부해야</u> -----. <u><단서 삭제></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u>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u>	제2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u>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u>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
----- 연기하거나 -----
----- 연기는 -----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간의 -----

-----.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연 락 처	(044) 200 - 6743